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062('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문서에 따라, **백신 수령시 유효기한 반드시 확인** 및 **유효기한이 짧은 백신부터 사용해 주실 것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다만,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경우 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축의약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변경허가 이전에 생산되어 비축중인 물량**에도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받았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변경허가 : 노바백스(5→6개월), 스카이코비원(6→9개월)('22.9.26.)

** 품질검사 성적서, 안정성시험 자료, 보관증명서 등 허가관련 동일한 품질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통지**('22.11.2., 식약처)

제품명	유효기간연장	제조번호	당초유효기한	연장유효기한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5 → 6개월	ND0222010	2022-12-20	2023-01-20
		ND0222011	2023-01-03	2023-02-03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 → 9개월	U0722004	2023-02-01	2023-05-01

5. 11.7일 이후 배송되는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 등에 적극적인 안내**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수령한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수신자 법무부장관(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장), 법무부장관(의료과장), 국방부장관(코로나19긴급대응과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 부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행정사무관 **김승혁** 백신계약팀장 전결 2022. 11. 4. **박준구**

협조자

시행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207 (2022. 11. 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6811 팩스번호 / plisse@korea.kr / 대국민 공개